

## 부속서 9C

### 제9장(국경 간 서비스 무역)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

#### 해상 서비스에 관한 약속에 대한 주해

다음의 서비스가 제9.2조제1항다호에서 기재된 의무에 의하여 달리 포섭되지 아니하는 경우, 각 당사국은 그러한 서비스가 타방 당사국의 국제해양운송업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<sup>1)</sup>

가. 도선

나. 예선 보조

다. 선용품공급, 연료 급유 및 급수

라.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처리

마. 항만 선석 배정 서비스

바. 항행 보조

사. 긴급수리시설

아. 정박, 그리고

자. 그 밖에 통신, 급수 및 전력 공급을 포함하여 선박운항에 필요한 육상운항 서비스

---

1) 다음의 서비스는 해상운송서비스에 관한 WTO 교섭단에 따라 규명된 바와 같다.